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 1. 21.(화) 10:00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 육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5년 1월 10일
- 회부일자: 2025년 1월 14일

3. 제안이유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기관의 등급 조정(4개 기관)

등급		사·군	위치	기관명
변경전	다	제천시	청풍면 학현소야로 393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제천분원
변경후	나			
변경전	라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암계원로 601	미원초등학교금관분교장
변경후	다			
변경전	라	제천시	한수면 미륵송계로6길 12	한송초등학교
변경후	다			
변경전	라	제천시	한수면 미륵송계로6길 12	한송중학교
변경후	다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이유

- 본 조례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4항¹⁾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²⁾ 따라 교육부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을 조정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의 추가 반영, 제외 지역 삭제, 등급 상승 및 하락지역 조정에 따라 변경 내용을 반영함
-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 구분은 가~과 등급으로 구분되고 상세 구분표는 <별표1>과 같음
- 2024년 교육부 특수지 정기실태조사³⁾ 결과 변경 지역 총 4개 기관의 등급이 변경되었고, 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1)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④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2)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급구분에 따라 특지는 월 6만원, 갑지는 월 5만원, 을지는 월 4만원, 병지는 월 3만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5. 9. 9., 1993. 1. 15., 1995. 1. 28., 2000. 1. 28., 2001. 1. 29., 2004. 5. 4., 2005. 1. 7., 2012. 1. 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 8.>

②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0에서 정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별표 10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의 적용요령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1985. 9. 9., 1998. 6. 1., 2000. 1. 28., 2008. 2. 29., 2008. 9. 10., 2021. 11. 30.>

③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85. 9. 9., 1991. 1. 28., 1991. 6. 27., 2001. 1. 29., 2005. 1. 7., 2008. 2. 29., 2008. 9. 10.>

④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신설 1999. 1. 21., 2001. 1. 29., 2008. 2. 29., 2008. 9. 10.>

3) 교육부 공문 시행: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정기 실태조사(시도교육청) 계획 알림- 실태조사 실시 후 실태조사결과 2023.12.05.까지 제출 [교육복지정책과-6382(2023.10.31.)시행]

순번	구분	기관명	지역	지번주소(리/동)	현행	개정 후
1	벽지	미원초등학교 금관분교장	충북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금관리 306-1	라	다
2	벽지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제천분원	충북	충북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 458-1	다	나
3	벽지	한송초등학교	충북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753	라	다
4	벽지	한송중학교	충북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753	라	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은
아래의 표와 같이 변동되어 적용됨

<* 충청북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 구분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제2조 관련 별표)

등급	시·군	위치	기관명
가	영동군	상촌면 물한4길 8	충청북도학생수련원
나	제천시	청풍면 학현소야로 393	충청북도학생수련원제천분원
다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암계원로 601	미원초등학교금관분교장
	제천시	한수면 미륵송계로6길 12	한송초등학교
		한수면 미륵송계로6길 12	한송중학교
	단양군	가곡면 보발본동1길 17	가곡초등학교보발분교장
라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658번길 301	용담초등학교현양원분교장
	충주시	대소원면 매현새터2길 10	달천초등학교매현분교장
	제천시	백운면 화당로 33	화당초등학교
	보은군	마로면 세중1길 2	세중초등학교
		회남면 회남로 1901-1	회남초등학교
	옥천군	군북면 방아실길 3-2	증약초등학교대정분교장
		동이면 우산로2길 23	동이초등학교우산분교장
	영동군	용화면 용화양강로 32	용화초등학교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1	충청북도학생수련원
		문백면 농다리로 536-45	은여울중학교
		문백면 농다리로 536-45	은여울고등학교
	괴산군	장연면 미선로오가5길 1	장연초등학교
		청천면 송면2길 13	송면초등학교
		청천면 문장로 2915	송면중학교
	단양군	가곡면 대대길 51	가곡초등학교대곡분교장
		어상천면 어상천로 930	어상천초등학교
		영춘면 별방창원로 449	영춘초등학교별방분교장
		영춘면 온달평강로 63-6	영춘초등학교
		영춘면 온달평강로 105	영춘중학교
		영춘면 장발선돌길 14	단양소백산중학교
		적성면 적성로 453	대가초등학교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금관리의 미원초등학교 금관분교장은 1일 대중교통 운행횟수가 20회에서 8회로 감소하면서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조정됨
-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에 있는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제천분원은 미용실 또는 대중목욕탕까지의 거리가 5.9km에서 13km로 변경되어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조정됨
-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에 있는 한송초등학교와 한송중학교는 대중교통의 운행횟수가 20회에서 16회로 감소하면서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조정됨

다.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4항에 따라 교육부의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의 추가 반영, 제외 지역 삭제, 등급 상승 및 하락지역 조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충청북도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에 있는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영동휴양소의 경우, 교육부에서 위탁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2026년까지 사용이 예정되어 현재 휴원 중이므로 인사혁신처의 특수지 정기실태조사결과 특수근무지에서 제외됨. 그러나 위탁교육시설 사용이 종료되면 기존 학생수련원 정원대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현행 조례의 등급 유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 2> 특수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등급 구분 요소가 2001년 이후 변동이 없이 유지되고 있어 급변하는 현대 디지털 사회와 등급 구분 요소가 부합하지 않아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별표1>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 <개정 2021. 1. 5.>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

1. 벽지지역

등급구분요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지역등급별 배점기준
가. 해당 기관에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까지의 거리	20km 이상 30km 미만	30km 이상 40km 미만	40km 이상 50km 미만	50km 이상 60km 미만	60km 이상	· 가지역: 39점 이상 · 나지역: 31점 이상 38 점 이하 · 다지역: 23점 이상 30 점 이하 · 라지역: 15점 이상 22 점 이하
나. 해당 기관에서 가장 가까운 역 및 시외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다. 해당 기관과 나목의 역 또는 시외 버스 정류장 사이의 1일 대중교통 운행 횟수(시내버스 등의 상행·하행 운행 횟수의 합)	17회 이상 20회 미만	13회 이상 16회 이하	9회 이상 12회 이하	5회 이상 8회 이하	4회 이하	
라. 해당 동 또는 리의 도로면적비율	1.5% 이상 2% 미만	1.0% 이상 1.5% 미만	0.5% 이상 1% 미만	0.5% 미만		
마. 해당 동 또는 리의 산지면적비율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바. 해당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병원·의원까지의 거리	20km 이상 30km 미만	30km 이상 40km 미만	40km 이상 50km 미만	50km 이상 60km 미만	60km 이상	
사. 해당 기관으로부터 일용품(잡화·식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슈퍼마켓(소규모 가게·상점 포함)까지의 거리	1km 이상 2km 미만	2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6km 미만	6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미용시설 또는 대중목욕탕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자. 해당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금융기관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차. 해당 동 또는 리의 상주 인구수	2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명 이상 200명 미만	50명 이상 100명 미만	50명 미만		
카. 해당 동 또는 리의 차량 보급률	30% 이상 40% 미만	20% 이상 30% 미만	10% 이상 20% 미만	10% 미만		
타. 해당 기관의 직원 수	5명 이상 10명 이하	3명 이상 4명 이하	2명	1명		
파. 해당 기관으로부터 8km 이내에 학교가 있는지의 여부	중학교 및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분교가 있는 경우	학교가 없는 경우		